

	규정 기획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TWP-B212
		제정일자	1997. 04. 01.
	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5
		페이지	1/4

목 차

부칙

작성부서	기획홍보처		제정일자	1997. 04. 01.
구 분	작 성	검 토	승 인	
직 책	담당	기획홍보처장	교무처장	산학협력처장
서 명				
일 자				



 동원대학교 DONGWON UNIVERSITY	규정	문서번호	TWP-B212
		제정일자	1997. 04. 01.
	기획위원회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5
		페이지	2/4

	규정	문서번호	TWP-B212
		제정일자	1997. 04. 01.
	기획위원회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5
		페이지	3/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직제규정 제7조에 의하여 “기획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<개정 2017.02.28.>

제2조(위원회 기능) [전문삭제 2017.02.28.]

제2조의1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대학 발전계획의 수립
 - 1. 대학교의 사명, 비전, 교육목표 등 교육가치 체계
 - 2. 대학발전을 위한 전략 및 계획
 - 3. 예산 등 대학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
- ② 대학 발전계획의 평가 및 개선
- ③ 기타 대학발전과 관련되는 주요정책 연구 및 계획
- ④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전문신설 2017.02.28.]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02.28.>

-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처장, 사무처장으로 한다.<개정 2010.4.12., 2017.02.28., 2018.02.19>
- ④ <삭제 2017.02.28.>
- ⑤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02.28..>
- ⑥ 간사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02.28.>

제4조(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회 업무의 서무를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의사록을 기록, 보관한다.

제5조(회의운영) ① 회의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되 위원 3분의 2이상의 제청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.

- ② 의사진행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17.02.28.>

	규정	문서번호	TWP-B212
	기획위원회 규정	제정일자	1997. 04. 01.
	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5
		페이지	4/4

제6조(대학발전기획팀) [전문삭제 2017.02.28.]

제7조(세부사항)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